

업무 방침:

범죄 피해자 – 지원 및 정보 제공

업무 방침 코드:

VIC 1

발효일:

2018 년 3 월 1 일

교차 참조:

CHI 1 IPV 1 SEX 1
VIC 2 VUL 1

일반

범죄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일은 사법 제도 관계자들이 하는 중요한 직무이다. 검사와 행정 직원은 피해자가 지역 사회와 경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도록 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검사는 다음 업무 방침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지침도 고려해야 한다.

- 아동과 취약한 청소년 – 범죄의 대상(Children and Vulnerable Youth – Crimes Against)(CHI 1)
-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IPV 1)
- 성인 상대 성범죄(Sexual Offences against Adults)(SEX 1)
- 취약한 피해자와 증인 – 성인(Vulnerable Victims and Witnesses – Adult)(VUL 1)

검사와 행정 직원은 BC [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VOCA\)](#)과 연방 [캐나다 피해자 권리 장전\(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CVBR\)](#)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유념해야 한다.

검사는 피해자의 법정 출두를 준비해야 하며, 아래에 기술된 대로 기소와 형사 사법 제도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추가 정보’ 부분 참고).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 기소 절차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피해자의 안전이 특히 우려되거나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는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 기소 과정, 미래의 공판일, 보석 조건, 그러한 소송 절차나 조건의 변동 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행정 직원이 직접 알리거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알리도록 해야 한다.

추가 정보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하기

- 범죄 피해자법(VOCA) 의거

경찰은 [범죄 피해자법](#) 제 5 조에 따라 정보 제공의 1 차 책임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사법 제도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사법 제도의 구조와 운용, 피해자 서비스(Victims Services) 프로그램, [정보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형사 상해 보상법\(Criminal Injury Compensation Act\)](#), [범죄 피해자법](#) 등에 관한 일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나 행정 직원은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면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그런 목적을 위하여 마련한 표준 정보를 피해자에게 소개한다.

[소년 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과 수사나 기소의 편견 배제 요건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VOCA 제 6 조 (1)(e) 및 (f)항은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법원 절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또는 보석 현황, 개개 법원 절차의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공개 대상 정보는 VOCA 제 6 조 (b), (c), (e), (f)항에 기술된 정보와 심리 대기 사건 일람표(court list)로는 분명히 알 수 없는 법정 출두 이유 정보로 제한된다.

- 캐나다 피해자 권리 장전(CVBR) 의거

CVBR 제 6 조에 피해자는 형사 사법 제도와 그 제도에서 피해자가 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피해자가 지닌 권리의 침해나 부인에 대하여 CVBR 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권리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제 7 조와 제 8 조에 피해자는 소송 절차 진행 장소, 진행 일시, 진행 상황, 진행 결과 등 특정 사건별 특정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제 20 조는 적절한 사법 운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상의 권리에 가해지는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를 제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범죄 피해자법](#) 제 4 조에 따라, 검사는 모든 피해자가 해당 범죄의 영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채택할 수 있는 증거를 선고 전에 법정에 제출할 타당한 기회를 반드시 갖게 해야 한다. 또한, [형법](#) 제 722 조 (2)항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작성 기회를 제공할 타당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검사에게 알아보아야 한다.

이외에도, [캐나다 피해자 권리 장전](#) 제 15 조와 제 19 조는 모든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해당 형사 사법 당국에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그 진술서를 당국이 고려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성

형법 제 722 조 (4)항에 따라 피해자는 주 총독이 해당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프로그램이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법무부 BC 소추 서비스부(Prosecution Service)의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프로그램은 주 총독령에 의하여 하위 조항에 따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작성 절차 개발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작성을 위하여 개발된 절차는 부록 A 에 수록되어 있다.

제출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는 형법 제 722 조 (1)항에 따라 대개 법원에 등록하여 제출하지만, 제 722 조 (5)~(7)항은 피해자가 신고 절차 중에도 제출할 수 있는 그 외의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제 722 조 (5)항에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술서를 법정에서 낭독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동반자를 가까이 대동하여 낭독하거나, 법정 밖에서 낭독(제 722 조 (7)항에 따라)하거나, 피해자가 범죄인을 보지 않도록 휘장 뒤에서 또는 기타 기기로 낭독하거나, 법원이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방식으로 낭독하는 방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 722 조 (6)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소송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의견이 있으면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제출할 때 해당 범죄 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와 원상회복 요구 진술서(Statement on Restitution) 작성 안내서에는 피해자가 제 722 조 (5)항과 제 722 조 (6)항의 이런 선택권을 요청하고자 하면 가능한 한 신고일 훨씬 전에 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원상회복

검사는 [형법](#) 제 738 조나 제 739 조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이 적합한지 고려해야 하며,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원상 회복을 구하는지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 사회 피해 영향 진술서

형법 제 722.2 조에 따라 지역 사회 일원은 주 총독이 해당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프로그램이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지역 사회 피해 영향 진술서(**community impact statement**)를 작성할 수 있다. 공공 안전 치안부(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olicitor General) 지역 사회 안전 범죄 예방국(Community Safety and Crime Prevention Branch)의 지역 사회 피해 영향 진술서 프로그램은 제 722.2 조 (2)항에 언급된 대로 주 총독령에 의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지역 사회 피해 영향 진술서 작성 [절차](#) 제정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다.

피해자 관련 기록 제시 신청

피고인 측이 피해자나 증인과 관련한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신청했고 피해자나 증인이 변호사 선임 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는 필요하면 해당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리 연기를 신청한다. 나아가, 적절한 경우, 검사는 피해자를 법률 서비스 협회(Legal Services Society)에 소개하여 법률 대리 신청을 하게 한다.

법무부는 성범죄 사건의 모든 고소인과 증인의 신청이 형법 제 278.3 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자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독립적인 법률 상담과 법률 대리 비용을 지원한다.

상소 법원에 대한 피해자의 상소 지원

BC 소추 서비스부 형사 상소 특별 기소과(Criminal Appeals and Special Prosecutions, CASP)가 상소 추진 결정을 내린 후 또는 CASP 가 상소인의 상소 통지서(Notice of Appeal)를 접수한 후 실행 가능한 대로 바로, 피해자가 VOCA 제 6 조에 따른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을 적용한다.

- CASP 는 적절한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보 수령 또는 소송 절차 참석에 대한 피해자의 관심 정도를 판단한다.
- CASP 는 피해자에게 상소 중 보석 신청 날짜를 통지하여 피해자가 보석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CASP 는 피해자에게 보석 신청의 결과를 통지하고 적합하다면 법원 명령 사본을 제공한다.
- CASP 는 피해자에게 상소 날짜와 상소의 최종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출정 날짜 또는 상소인의 보석 현황상 변동 사항을 통지하여 특권이나 의무로 보호 관찰 명령을 고수하게 한다. 이외에도, 새로운 재판 명령이 있는 경우, CASP 는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운 재판 관할 지역의 검사 사무소에 연락할 수단을 제공한다.

가석방이나 임시 출소 자격 또는 기타 교정 관련 건에 대한 질문은 지역 가석방 사무소나 보호 관찰 사무소 또는 범죄인이 구금된 기관에 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을 통해 제공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역 사회 중심 피해자 지원 전문 프로그램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관계자가 피해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CASP 사무소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정보를 직접 제공한다[*범죄 피해자 - 정보 제공(Victims of Crime - Providing Information to)*(VIC 2)].

부록 A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작성 절차

법무부 BC 소추 서비스부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 소추 서비스부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VIS) 양식을 받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VIS 양식 제공. 대다수 경우, 혐의가 승인되면 VIS 양식과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및 원상회복 요구 진술서 작성 안내서가 들어 있는 VIS 패키지가 피해자 및/또는 증인에게 제공됨. VIS 양식은 BCPS 웹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음.
피해자가 양식 작성 시 도움을 받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서비스 담당관이 피해자의 VIS 작성을 도울 수 있음. 피해자는 VictimLinkBC에 연락하면 피해자 서비스 담당관을 소개받을 수 있음.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내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작성한 VIS를 기소 담당 검사 사무소로 제출함.
검사의 진술서 심사 및 검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는 VIS 검토 및 심사 책임이 있음.
진술서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사에게 공개되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는 VIS를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사에게 공개할 책임이 있음.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죄 판결 후 및 법원 선고 전 검사가 법원에 VIS 제출.